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	승인일	시행일	승인권자
제정	2016.10.25	2016.11.08	대표이사

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.

제3조 (수수료의 구분)

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운용보수는 해당 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받는 추가적인 금전을 말한다.
 - 나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
 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 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 (공시 및 통보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 (제정 및 개정)

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지침은 2016년11월8일부터 시행한다.